

국회에서 의결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박범계
(대법원 소관)

● 법률 제18720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관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등 청구는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등 사유가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법관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국고횡령 및 배임 등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의 경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